

미국 산불피해 직접보상 프로그램(WRCP)의 운영 성과와 시사점

홍보배 연구원

요약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발화원으로 지목된 전력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직접보상 프로그램(WRCP)을 도입함. WRCP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실을 소송 대신 표준화된 직접청구 방식으로 배상하는 제도로, 초기 운영과정에서 처리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낮은 참여율과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 등 구조적 한계도 나타남. 이러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적 신속보상제도가 정책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25년 1월 발생한 Eaton Fire 이후 발화원으로 지목된 전력회사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보상 프로그램인 Wildfire Recovery Compensation Program(WRCP)을 도입함¹⁾
 - Eaton Fire는 캘리포니아 Altadena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WRCP 대상 지역 내 약 5,900개 재산이 전손(Total loss)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됨²⁾
 - 캘리포니아 공적 지진보험기관이자 주정부 산불기금 관리기관인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CEA)의 “SB 254 Natural Catastrophe Resiliency Study Report”에 따르면 Eaton Fire의 보험손실은 150억 달러를 초과하며, 전체 손실규모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³⁾
 -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 중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실이 상당한 데다 피해보전을 위한 절차에도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신속한 피해회복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재난피해 보상체계 개선이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음⁴⁾
 - 2025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손실보상 체계 개선을 위해 SB 254(2025)를 제정하고, 보험회사·전력회사·정부 등 다양한 주체 간 자연재난 손실의 합리적 분담과 피해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보상모형 검토를 지시함
 - 구체적으로 산불피해자에게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간소화·저비용 보상체계(Streamlined, Low-cost Mechanism)의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함
- WRCP는 장기간의 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손해배상 절차를 보완하여 피해자가 표준화된 직접청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율적 피해보상 프로그램임⁵⁾

1) SCE(2025. 7. 23.), “Southern California Edison Announces Wildfire Recovery Compensation Program for Eaton Fire, Launching This Fall”

2) RAND(2026. 8. 12.), “Southern California Edison's Wildfire Recovery Compensation Program: A Look at Performance to Date”

3)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2026. 4. 7.), “Enhancing California's Resiliency to Natural Catastrophes: Senate Bill 254 (2025) Study Report”

4)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2026. 4. 7.), “Enhancing California's Resiliency to Natural Catastrophes: Senate Bill 254 (2025) Study Report”

5) Southern California Edison(2025. 10. 29.), “Now Available: Wildfire Recovery Compensation Program for Eaton Fire”

- 대형 산불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주택보험 등을 통해 우선 보상받은 후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 책임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전력회사와 관련된 산불의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음
 - 보험은 화재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보상하므로 가장 신속한 피해보상 수단인 반면, 전력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는 해결까지 평균 약 4년이 소요되고 법률비용으로 인해 실질 보상액이 약 25~40%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음⁶⁾
- 특히, 대형 재난에서는 재난 이후 노동력과 건축자재의 수요급증에 따른 재건비용 상승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손실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보험(Underinsurance)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 이러한 보험 보상의 한계를 고려할 때, WRCP는 보험을 대체하는 제도라기보다는 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 기존 소송보다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상경로로 기능함

○ WRCP는 신속한 피해보상과 법률비용 절감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전체 피해자 대비 낮은 참여율,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 부족, 보험금과의 보상조정 방식 관련 논란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나타남⁷⁾

- 2026년 7월 6일 기준 WRCP에는 약 4,000건의 청구가 접수되어 2,069건의 보상안이 제시되었고 1,598건이 수락되었으며, 그중 960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됨
 - 서류 완비 후 보상안 제시까지 평균 약 35일이 소요되어 처리목표인 90일보다 크게 단축되었으며, 접수된 청구의 약 3분의 2는 변호사 없이 제출되어 법률비용 절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보상안이 제시된 청구만을 기준으로 보면 수락률이 높은 편이나, 전체 전손 재산 대비 WRCP 청구 비율은 약 20%, 실제 수락 비율은 약 7%에 불과해 전체 피해자 차원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보상재원을 부담하는 SCE가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함에 따라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도 제기됨
 -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RAND는 향후 유사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독립적인 운영주체를 활용하고 피해자·보험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제도설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 아울러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아닌 보험계약상 이용 가능한 보장금액(Insurance available)을 WRCP 보상액에서 차감하고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 중인 피해자가 차액을 부담할 위험도 제기됨

○ WRCP의 운영경험은 캘리포니아 재난피해 보상체계 개편 논의에 활용되고 있으며, 주정부가 관리하는 신속보상(Fast-pay) 제도가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⁸⁾

- SB 254 보고서는 산불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주정부가 관리하는 신속보상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적인 공적 주체를 통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상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다만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가 기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보상액을 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상절차의 신속성과 충분한 보상 간의 균형 및 피해자의 소송권 보장이 주요 과제로 지적됨
- 향후 대형 재난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보험의 보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실에 대한 책임배상 절차를 효율화하고, 보험금과 직접보상 간 조정 등 합리적인 손실분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2026. 4. 7.), "Enhancing California's Resiliency to Natural Catastrophes: Senate Bill 254 (2025) Study Report"

7) RAND(2026. 8. 12.), "Southern California Edison's Wildfire Recovery Compensation Program: A Look at Performance to Date"

8)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2026. 4. 7.), "Enhancing California's Resiliency to Natural Catastrophes: Senate Bill 254 (2025) Study Report"